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검 토 보 고 서**

**<제209회 임시회>**

2012. 6. 25.

**달 성 군 의 회**  
전문위원 신 후 남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12년 6월 14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기획감사실)
3. 개정이유

○ 2012년 사무직렬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 및 기능직 운전원 퇴직에 따른 정원조정을 하여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총 정원 719명(변동없음) (안 제2조)

1) 집행기관 : 707명 (변동없음)

○ 일반직 : 635명 ⇒ 642명(증7)

○ 기능직 : 55명 ⇒ 48명(감7)

➔ 기능7급 2, 기능8급 2, 기능9급 3

○ 연구·지도직, 별정직 변동없음

2) 의 회 : 12명(변동없음)

나.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별표와 같이 함(안 제4조)

1) 본 청 : 414명(변동없음)

○ 일반직 : 증5 (7급 +2, 8급 +2, 9급 +1)

○ 기능직 : 감5 (7급 Δ2, 8급 Δ1, 9급 Δ2)

- 2)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 변동없음
- 3) 읍
  - 일반직 : 증2 (8급 +1, 9급 +1)
  - 기능직 : 감2 (8급 △1, 9급 △1)
- 4) 면 : 변동없음

## 5.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 제30조, 제38조
- 「지방자치법」 제112조

##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의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사무직렬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 및 기능직 운전원의 퇴직시  
그 정원을 일반직 정원으로 조정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본 개정조례안은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인력 운용과 효과적인 행정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붙임 1) 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관계법령 1부.

붙임 1)

##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별표 2,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별 표 1 】

##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 (제3조제1항 관련)

구 분	일 반 직	기능직 · 고용직	별정직 · 정무직
비 율	92%이상	7% 이내	1% 이내

## 비 고

1.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 · 지도직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2. 읍 · 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 별 표 2 】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 공무원

구 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비 율	1% 이내	6% 이내	28% 이내	30% 이내	25% 이내	10% 이상

비 고 :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2. 기능직 공무원

구 분	6급	7급	8급	9급
비 율	5%이내	21%이내	32%이내	42%이상

비 고 :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3. 연구직·지도직 공무원

구 분	연 구 직		지 도 직	
	연 구 관	연 구 사	지 도 관	지 도 사
비 율	3% 이내	97% 이상	8% 이내	92% 이상

비 고 :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4. 별정직 공무원

구 분	5급상당 이상	6급상당	7급상당	8급상당	9급상당
비 율	-	100%	-	-	-

비 고

1.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2.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 【 별표 3 】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구 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과	직 속 기 관	사업소	읍 및 그 출장소	면
총 계	719	414	12	100	13	84	96
정무직 계	1	1					
군 수	1	1					
일반직 계	642	389	8	71	9	79	86
3급	1	1					
4급	4	3		1			
5급	35	20	3	2	1	3	6
6급이하 계	602	365	5	68	8	76	80
별정직 계	2	1		1			
5급상당							
6급상당 이하 계	2	1		1			
연구직 계	2	2					
연구관							
연구사	2	2					
지도직 계	24			24			
지도관	2			2			
지도사	22			22			
기능직 계	48	21	4	4	4	5	10

붙임 2)

## 신·구조문 대비표

현				개			
행				정			
안							
(별표1)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1항관련)				(별표1)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1항관련)			
구분	일반직	기능직·고용직	별정직·정무직	구분	일반직	기능직·고용직	별정직·정무직
비율	92%이상	8% 이내	1% 이내	비율	92%이상	7% 이내	1% 이내

현행							개정안						
(별표2)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별표2)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 공무원							1. 일반직 공무원						
구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구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비율	1% 이내	6% 이내	28% 이내	30% 이내	25% 이내	10% 이상	비율	1% 이내	6% 이내	28% 이내	30% 이내	25% 이내	10% 이상
2. 기능직 공무원							2. 기능직 공무원						
구분	6급	7급	8급	9급			구분	6급	7급	8급	9급		
비율	4% 이내	22% 이내	31% 이내	43% 이내			비율	5% 이내	21% 이내	32% 이내	42% 이내		
3. 연구직·지도직 공무원							3. 연구직·지도직 공무원						
구분	연구직		지도직				구분	연구직		지도직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		
비율	3%이내	97%이상	8%이내	92%이상			비율	3%이내	97%이상	8%이내	92%이상		
4. 별정직 공무원							4. 별정직 공무원						
구분	5급상당 이상	6급 상당	7급 상당	8급 상당	9급 상당		구분	5급상당 이상	6급 상당	7급 상당	8급 상당	9급 상당	
비율	-	100%	-	-	-		비율	-	100%	-	-	-	

현								개 정 안							
(별표3)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관련)								(별표3)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관련)							
구 분	총계	본 청	의 회 사무과	직속 기관	사업소	읍 및 그 출장소	면	구 분	총계	본 청	의 회 사무과	직속 기관	사업소	읍 및 그 출장소	면
총 계	719	414	12	100	13	84	96	총 계	719	414	12	100	13	84	96
정무직계	1	1						정무직계	1	1					
군 수	1	1						군 수	1	1					
일반직계	635	384	8	71	9	77	86	일반직계	642	389	8	71	9	79	86
3급	1	1						3급	1	1					
4급	4	3		1				4급	4	3		1			
5급	35	20	3	2	1	3	6	5급	35	20	3	2	1	3	6
6급이하계	595	360	5	68	8	74	80	6급이하계	602	365	5	68	8	76	80
별정직계	2	1		1				별정직계	2	1		1			
5급상당								5급상당							
6급상당 이하계	2	1		1				6급상당 이하계	2	1		1			
연구직계	2	2						연구직계	2	2					
연구관								연구관							
연구사	2	2						연구사	2	2					
지도직계	24			24				지도직계	24			24			
지도관	2			2				지도관	2			2			
지도사	22			22				지도사	22			22			
기능직계	55	26	4	4	4	7	10	기능직계	48	21	4	4	4	5	10

붙임 3)

## 관계 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제29조(직급별 정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본청·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 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 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⑤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8조(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규칙의 입법예고)**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나 정원의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규칙의 제정·개정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아니하거나 기구·정원의 감축 또는 하위직으로의 직급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아니하지만 상위직으로의 직급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입법예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7.3>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와 정원의 조정으로 추가로 경비가 드는 조례안을 제1항에 따라 입법예고하는 경우 그 추가로 드는 경비를 나타내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122조(건전재정의 운영)**

-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정을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 ② 국가는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건전한 운영을 조장하여야 하며,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서는 아니 된다.

# 대구광역시 달성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 I. 개 요

1. 제 출 일 : 2012년 6월 14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사회복지과)
3. 제 정 이유

○ 아동과 여성의 안전망 구축을 위한 민·관 협력 및 연계, 자원·정보교류 등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 4. 주요내용

### 가. 지역연대의 설치 및 기능(안 제7조)

-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시책 수립·추진 및 점검
- 아동·여성보호 관련 서비스 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
- 위기아동 및 여성의 긴급구조 및 공동 대응
- 아동·여성의 안전 확보 등 지역안전망 구축을 위한 각종 제반사업

### 나. 지역연대의 구성(안 제8조)

-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부군수), 부위원장(호선)

## 5. 관계법령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본 조례안의 제정은 아동과 여성에 대한 제도적·실제적 보호를 통하여 폭력 피해를 예방하고, 관련시설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달성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이며,
- 또한 사전 가족상담 활동 및 아동안전 지도제작 홍보 등의 정책추진의 타당성이 확보되어 아동·여성의 보호기능 및 지역안전망 구축의 확대·강화에 일조함으로써 건강하고 안전한 지역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붙임 1)

## 대구광역시 달성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2조에 따른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2. "아동·여성폭력"이란 아동학대,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학교폭력, 유괴, 실종 등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아동·여성이 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군은 아동·여성폭력을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제4조(군민의 책무) 모든 군민은 아동·여성폭력을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군은 효율적인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치료를 위하여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시책
2. 아동·여성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아동·여성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아동·여성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지역연대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보호정책을 추진하고,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피해자의 복합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이하 "지역연대"라 한다)를 설치·운영 한다.

② 연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시책 수립·추진 및 점검에 관한 사항
2. 아동·여성보호 관련 서비스 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위기아동 및 여성의 긴급구조 및 공동 대응에 관한 사항
4. 지역내 아동·여성보호를 위한 주민홍보와 캠페인 실시에 관한 사항
5. 아동·여성의 안전 확보 등 지역안전망 구축을 위한 각종 제반사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부의한 사항

제8조(지역연대의 구성) ① 지역연대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한다.

②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위원장 1명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아동·여성보호와 관련된 다음 각호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을 받아 추천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고 아동·여성 폭력예방과 보호업무 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여성폭력 관련시설 및 아동보호관련 기관
2. 청소년시설 및 가족지원시설
3. 의료기관, 교육기관, 경찰·사법 관련 기관
4. 그 밖에 아동·여성보호 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 관계자

④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한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의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지역연대를 대표하며,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지역연대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소속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때 회의를 개최한다.

② 지역연대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간사) ① 지역연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보호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며 회의록을 작성·보관한다.

제12조(사업비의 지원 및 정산) ① 군수는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그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② 사업비를 지원받은 기관 또는 시설은 법령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하여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 등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관련정보의 제공) 군수는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실비보상) 군수는 지역연대 기능수행 및 아동·여성보호 시책의 수립·추진을 위한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 관계 법령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의 예방·방지와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가정폭력 신고체계의 구축 및 운영
2.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3.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의 설치·운영, 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 부여와 그 밖에 피해자에 대한 지원 서비스의 제공
4.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기관 간의 협력 체계 구축 및 운영
5. 가정폭력의 예방·방지와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의 수립·시행 및 평가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따르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가정폭력의 예방·방지 및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담당할 기구와 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2항과 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대하여 경비(經費)를 보조하는 등 이를 육성·지원하여야 한다.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을 방지하고 성폭력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를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성폭력 신고체계의 구축·운영
  2. 성폭력 예방을 위한 조사·연구, 교육 및 홍보
  3.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4. 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 직업훈련 및 법률구조 등 사회복귀 지원
  5.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운영
  6. 성폭력 예방을 위한 유해환경 개선
  7.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의 수립·시행 및 평가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따른 예산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3조(국가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이하 "성매매피해자등"이라 한다)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성매매, 성매매알선등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조사·연구·교육·홍보
2. 성매매피해자등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외국인여성을 위한 시설을 포함한다)의 설치·운영

② 국가는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국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아동·

청소년을 성적 착취와 학대 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연구·교육 및 계도와 더불어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며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착취와 학대 행위가 국제적 범죄임을 인식하고 범죄 정보의 공유, 범죄 조사·연구, 국제사법 공조, 범죄인 인도 등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 I. 개 요

1. 제 출 일 : 2012년 6월 14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사회복지과)
3. 개정이유

○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에 따라 기존 청소년센터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련시설 전체에 대한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 4. 주요내용

- 가. 제명변경 :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나. 청소년“센터” 관련 조항을 청소년“수련시설”로 개정
- 다. 문화의 집 사용허가 및 사용료, 위탁운영 등 개정

## 5. 관계법령

- 「청소년 기본법」 제8조
- 「청소년 활동진흥법」 제11조

##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본 개정조례안은 ‘센터’를 ‘수련시설’로 제명을 변경하여 기존의 ‘청소년센터’와 앞으로 건립되는 ‘청소년 문화의 집’ 등의 청소년 수련시설을 포괄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으며,
- 또한 본 조례안의 개정으로 수련시설 전체에 대한 체계적·효율적 운영 및 관리가 이루어져 청소년활동의 지원과 청소년 복지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붙임 1) 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관계법령 1부.

붙임 1)

##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조례는 「청소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에 따라”로,  
“청소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청소년수련시설”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청소년”이라 함은”을 ““청소년”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청소년수련활동”이라 함은”을 ““청소년수련활동”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청소년단체”라 함은”을 ““청소년단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사용료”라 함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사용료”란은 제3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강습료”란 제3조에 따른 시설을 이용하여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수련 시설”이라 한다)에서 개설한 강좌에 수강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제2항의 “센터”를 “청소년 센터”로 한다.

① 청소년 수련시설의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 센터 :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남리 논공로 252

2. 청소년 문화의 집 :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가창로 220길 6-3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청소년 문화의 집에는 실내집회장, 자치활동실, 강의실 등을 둘 수 있다.

제4조제1항 중 “센터는”을 “수련시설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센터”를 “수련시설”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센터”를 “수련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센터”를 “수련시설”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센터”를 “수련시설”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중 “센터”를 각각 “수련시설”로 한다.

제7조제1항 본문 중 “센터”를 “수련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센터”를 “수련시설”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센터”를 “수련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센터를”를 “수련시설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센터 시설”을 “수련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11조제2항의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제12조제2항제8호 중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수련관”을 “수련시설”로 한다.

제15조제1항 전단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센터를”을  
“제2항에 따라 수련시설을”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이하“위탁조례””를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이하“위탁  
조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센터”를 “수련시설”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센터”를 “수련시설”로,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센터”를  
“제2항에 따라 수련시설”로,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센터”를 “수련시설”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8조에 따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센터”를 “수련시설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센터”를 각각 “수련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3조 중 “센터”를 “수련시설”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는 센

터를”을 “제5조에 따른 사무는 수련시설을”로 한다.

제24조 중 “「달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달성군 재무회계규칙」을  
“「대구광역시 달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무  
회계규칙」”으로 한다.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를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로 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시설 사용료

구 분	기준	금 액		비 고
		청소년	일반	
헬스장	1인/1월	15,000	30,000	
강당	오전	20,000	40,000	마이크 2개
	오후	25,000	50,000	
	야간	30,000	60,000	
체육관	오전	30,000	60,000	
	오후	50,000	100,000	
	야간	70,000	140,000	
인공암벽장	1인/월	20,000	30,000	1일 2시간
	1인/일	3,000	6,000	2시간
아외공연장	오전	35,000	50,000	
	오후	50,000	70,000	
	야간	70,000	100,000	
음악연습실	2시간	10,000	20,000	
강의실	1회	15,000	25,000	

2. 부속설비 사용료

구 분	기준	금 액		비 고
		청소년	일반	
빔프로젝트	1회	15,000	30,000	
조명(무빙라이트)	1회	20,000	30,000	
냉·난방	강당 1회	55,000	80,000	
	강의실 1회	15,000	30,000	
노트북	1회	15,000	30,000	
음향(추가마이크)	1회	5,000	10,000	기본외 개당

3. 시간구분

구분	시간	비 고
오전	09:00 ~ 12:00	
오후	13:00 ~ 17:00	
야간	18:00 ~ 21:00	공휴일은 운영안함

※토·일요일, 공휴일에 이용하는 일반인에 대해서는 해당 기준 이용료의 30%를 가산함.

※허가된 이용시간보다 1시간 이상 초과할 경우 다음 회 이용료 전액을 가산함.

붙임 2)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청소년기본법</u>」(이하 “<u>법</u>”이라 한다)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의 복지 증진과 정서함양 등 건전한 청소년육성을 위한 청소년의 수련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달성군 <u>청소년센터</u>(이하 “<u>센터</u>”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조례는 「<u>청소년기본법</u>」 제18조에 따라 ----- ----- ----- <u>청소년수련시설</u> ----- -----</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p> <p>1. “<u>청소년</u>”이라 함은 9세이상 24세이하의 사람을 말한다.</p> <p>2. “<u>청소년수련활동</u>”이라 함은 청소년이 <u>청소년활동</u>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청소년 시기에 필요한 기량과 품성을 함양하는 교육적 활동으로서 청소년지도자와 함께 <u>청소년수련거리</u>에 참여하여 배움을 실천하는 체험 활동을 말한다.</p> <p>3. “<u>청소년단체</u>”라 함은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p> <p>4. “<u>사용료</u>”라 함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사용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p>	<p>제2조(정의) ----- -----</p> <p>1. “<u>청소년</u>”이란 ----- -----</p> <p>2. “<u>청소년수련활동</u>”이란 ----- ----- ----- -----</p> <p>3. “<u>청소년단체</u>”란 ----- -----</p> <p>4. “<u>사용료</u>”란은 제3조에 따른 ----- -----</p>

<p>5. “강습료” 라 함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이용하여 센터에서 개설한 강좌에 수강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p> <p>제3조(위치 및 시설) ① 센터는 논공읍 남리 717-8번지에 둔다.</p> <p>② 센터에는 실내집회장, 체육활동장, 자치활동실, 특성화수련활동장, 상담실 등을 둘 수 있다.</p> <p>&lt;신 설&gt;</p> <p>제4조(관리·운영) ① 센터는 달성군수 (이하 “군수” 라 한다)가 관리·운영한다.</p> <p>②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위탁할 수 있다</p> <p>제5조(업무) 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p> <p>1. 센터에 대한 종합운영계획의 수립</p> <p>2. ~ 4. (생략)</p> <p>5. 청소년과 가족 등 센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무료 순환버스 운영</p>	<p>5. “강습료”란 제3조에 따른 시설을 이용하여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에서 개설한 강좌에 수강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p> <p>제3조(위치 및 시설) ① 청소년 수련시설의 위치는 다음과 같다.</p> <p>1. 청소년 센터 :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남리 논공로 252번지</p> <p>2. 청소년 문화의 집 :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가창로 220길 6-3</p> <p>② 청소년 센터----- ----- -----.</p> <p>③ 청소년 문화의 집에는 실내집회장, 자치활동실, 강의실 등을 둘 수 있다.</p> <p>제4조(관리·운영) ① 수련시설은----- ----- -----.</p> <p>②----- 수련시설----- -----</p> <p>제5조(업무) 수련시설----- -----.</p> <p>1. 수련시설----- -----</p> <p>2. ~ 4. (현행과 같음)</p> <p>5. ----- 수련시설 ----- -----</p>
--	--

<p>6. (생략)</p> <p>제6조(사용자의 범위) ① 센터의 이용 또는 사용대상자(이하 “사용자” 라 한다)는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와 같다.</p> <p>1. 2. (생략)</p> <p>② 군수는 센터의 상시이용시설에 대하여 회원을 모집하고 회원권을 발행할 수 있다.</p> <p>제7조(사용시간 등) ① 센터의 사용시간은 09:00부터 22:00까지로 한다. 다만, 군수가 시설 또는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별도의 사용시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② 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센터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한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임시 휴관할 수 있다.</p> <p>1. 2. (생략)</p> <p>③ 제1항 및 제2항의 단서에 의하여 별도의 사용시간을 정한 때와 임시 휴관하는 때에는 사용자 등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p> <p>제8조(사용허가) ① 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p>	<p>6. (현행과 같음)</p> <p>제6조(사용자의 범위) ① 수련시설----- ----- -----</p> <p>1. 2. (현행과 같음)</p> <p>② ----- 수련시설----- ----- -----</p> <p>제7조(사용시간 등) ① 수련시설----- ----- ----- ----- -----</p> <p>② 수련시설----- 수련시설----- -----</p> <p>1. 2. (현행과 같음)</p> <p>③ ----- 따라 ----- ----- -----</p> <p>제8조(사용허가) ① 수련시설을----- ----- -----</p>
--	---

<p>다만, 군수가 사용권, 관람권을 발매하거나 또는 무료 사용 시설물에는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한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은 사용개시 7일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p> <p>③·④ (생략)</p> <p>제10조(사용허가 취소) ① (생략)</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생긴 불이익에 대하여 군수는 이를 책임지지 않는다.</p> <p>제11조(사용료 등) ①군수는 센터 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 또는 강습료를 징수할 수 있다.</p> <p>②제1항에 의한 사용료 및 강습료의 범위는 별표와 같으며, 허가시에는 징수한다.</p> <p>제12조(사용료 면제 및 감면) ① (생략)</p> <p>②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p> <p>1. ~ 7. (생략)</p> <p>8. 「<u>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u>」에 의한 참전유공자증 또는 참전유공자 유족증을 소지한 사람</p> <p>9. (생략)</p>	<p>-----</p> <p>-----</p> <p>-----</p> <p>②제1항에 따른 -----</p> <p>-----</p> <p>③·④ (현행과 같음)</p> <p>제10조(사용허가 취소) ① (현행과 같음)</p> <p>②제1항에 따른 -----</p> <p>-----</p> <p>제11조(사용료 등) ①----- 수련시설-</p> <p>-----</p> <p>②----- 따른 -----</p> <p>-----</p> <p>제12조(사용료 면제 및 감면) ① (현행과 같음)</p> <p>②-----</p> <p>-----</p> <p>1. ~ 7. (현행과 같음)</p> <p>8. 「<u>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u>」-----</p> <p>-----</p> <p>9. (현행과 같음)</p>
---	--

<p>③ (생략)</p> <p>제14조(손해배상) ① (생략)</p> <p>②사용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u>수련관의 시설물 및 부대시설물</u>을 손괴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회복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액을 배상 하여야 한다.</p>	<p>③ (현행과 같음)</p> <p>제14조(손해배상) ① (현행과 같음)</p> <p>②----- ----- <u>수련시설</u> ----- ----- -----</p>
<p>③ (생략)</p> <p>제15조(위탁운영) ①군수는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u>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u>」(이하 “위탁조례”라 한다)에 의한다. 다만 군수가 설립한 법인 중 청소년 보호·복지·활동지원을 사업내용으로 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우선 위탁 할 수 있다.</p>	<p>③ (현행과 같음)</p> <p>제15조(위탁운영) ①----- 제2항에 따라 <u>수련시설을</u> ----- ----- 「<u>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u>」(이하 “위탁조례” ----- ----- -----</p>
<p>② (생략)</p> <p>③센터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운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재 위탁 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설립한 법인 중 청소년 보호·복지·활동지원을 사업내용으로 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별도의 위탁기간을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② (현행과 같음)</p> <p>③<u>수련시설</u>----- ----- ----- -----</p>
<p>④ (생략)</p> <p>제16조(운영지원) ①군수는 센터의 운영을 위탁한 수탁자에게 「<u>청소년활동진흥법</u>」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p>	<p>④ (현행과 같음)</p> <p>제16조(운영지원) ①----- <u>수련시설</u>----- ----- ----- 제2항에 따라 <u>수련시설</u>-----</p>

<p>예산의 <u>범위 안에서</u> 지원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제17조(수탁자의 의무) 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수탁자는 다음 각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p> <p>1. ~ 6. (생략)</p> <p>제19조(반환 및 기부채납) ①수탁자는 <u>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u> 위탁이 취소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각종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그 밖의 재산을 지체 없이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제20조(회계 및 결산) ①수탁자는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다음연도의 센터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군수는 <u>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u>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받은 때에는 회계연도 개시 15일전까지 수탁자에게 승인 통보하여야 한다.</p> <p>③ (생략)</p> <p>제21조(지도·감독) ①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에게 센터의 운영상황 및 주요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연 1회 이상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필요시 수시 지도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p>	<p>----- 범위-----</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7조(수탁자의 의무) <u>수련시설</u>-----</p> <p>-----</p> <p>-----</p> <p>1. ~ 6. (현행과 같음)</p> <p>제19조(반환 및 기부채납) ①-----</p> <p><u>제18조에 따라</u> -----</p> <p>-----</p> <p>-----</p> <p>-----</p> <p>② (현행과 같음)</p> <p>제20조(회계 및 결산) ①-----</p> <p>-----</p> <p><u>수련시설의</u> -----</p> <p>-----</p> <p>②----- <u>제1항에 따른</u> -----</p> <p>-----</p> <p>-----</p> <p>③ (현행과 같음)</p> <p>제21조(지도·감독) ①----- <u>수련시설</u>-----</p> <p><u>수련시설</u>-----</p> <p>-----</p> <p>-----</p> <p>-----</p>
--	---

<p>② (생략)</p> <p>③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거나 검사결과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부당하게 처리하는 경우 이의 시정을 문서로 명령할 수 있다.</p> <p>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령을 받은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조치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제23조(권한의 위임·위탁) 군수는 센터를 위탁·운영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는 센터를 위탁받은 수탁자에게 위임된 것으로 본다.</p> <p>제2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청소년기본법」·「청소년활동진흥법」·「청소년복지지원법」·「달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달성군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p> <p>제25조(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제1항에 따라 ----- ----- -----.</p> <p>④제3항에 따른 ----- ----- -----.</p> <p>제22조(권한의 위임·위탁) ----- 수련시설을 ----- ----- 제5조에 따른 사무는 수련시설을 ----- -----.</p> <p>제23조(준용) ----- ----- ----- 「대구광역시 달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무회계규칙」----- -----.</p> <p>제24조(시행규칙) ----- -----</p>
---	--

붙임 3)

## 관계 법령

### [청소년 기본법]

####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의 지원, 청소년복지의 증진 및 청소년보호의 수행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로 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고 근로가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의 책임 수행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 [청소년 활동진흥법]

#### 제11조(수련시설의 설치·운영 등)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은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1. 국가는 2 이상의 시·도 또는 전국의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국립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2.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각각 제10조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관을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3.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읍·면·동에 제10조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문화의집을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4.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0조제1호 라목 내지 바목에 의한 청소년 특화시설·청소년야영장 및 유스호스텔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국가는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수련시설의 설치·운영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 ③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규모의 부지변경, 건축연면적의 증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이하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